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

1998. 4.28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안자 : 충청북도교육감 제출

2. 제안및회부일자

- 제안 : 1998년 4월 15일 제출
- 회부 : 1998년 4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초·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에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부여되도록 개정코자함

4. 주요골자

-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31조를 초·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62조로 개정 (안 제1조)
- 학생수가 60명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고,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 (안 제2조제1항)
- 병설학교및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 (안 제2조제4항)
-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초·중등교육법 제32조와 중복되는 다음의 심의사항을 삭제 (안 제9조)

- 학교현장 및 규칙의 제·개정
 -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비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·결산 및 찬조금 등에 관한 사항
 -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 (교장, 교사)의 선정
 - 학부모·교원·학생·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
- 상위법령에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사항이 규정되지 않았으므로, 재심의 요구 안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불필요하여 삭제 (안 제13조제2항)
 -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범위는 교감에서 교직원으로 개정 (안 제14조)
 - 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 (서무책임자)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(안 제18조)

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의 정비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월권 또는 집행불가능한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